

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6. 02. 27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- 가. 제출일자 : 2006년 2월 13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17일 회부
- 라. 상정일자 :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06년 2월 24일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 설명자 : 기획재정국장 홍 성 배)

가. 제 안 이 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현안 수요 및 행정혁신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 17억원이 2005. 12. 30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예산규모 _____ 243,541,853천원
(단위:천원)

구 분	예산현액	기정예산액	간주처리액	추경예산(안)
합 계	243,541,853	240,940,093	901,760	1,700,000
일 반 회 계	201,601,760	199,000,000	901,760	1,700,000
특 별 회 계	41,940,093	41,940,093	0	-
의료급여기금	151,213	151,213	0	-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1,660,462	1,660,462	0	-
주 차 장	40,128,418	40,128,418	0	-

- 주요내역(추경예산) ————— 총 1,700,000천원
 - 관급공사 부실예방 시스템구축 ————— 80,000천원
 - 기록물 D/B구축 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 공사 ————— 105,000천원
 -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실 설치 ————— 550,000천원
 -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업 ————— 171,000천원
 - 디지털행정(종이 없는 사무실) 구축 ————— 18,000천원
 - 혁신 추진부서 (유공자) 인센티브 포상금 등 ————— 50,000천원
 - 생활권 공원 확충(문래동 공원) ————— 700,000천원
 - 경로당, 어르신 정보문화 센터로 전환 ————— 26,000천원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 찬 재)

-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2(특별교부세 교부기준 등)에 의하면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인 국가적 행사,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재정수요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, 지방행정 및 재정 운용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재정지원의 용도로 교부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교부조건 또는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것임.
- 이에 따라 본 예산안 중 10억원에 대하여는 2006.2.14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, 생활권 공원 확충 특별교부세 7억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었음.
- 따라서 본 예산안은 승인된 사업 또는 지정된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됨.

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